

[ 2019. 7. 2.] [ 29950 , 2019. 7. 2., ]

- 1 ( )
- 2 ( )
- 2 2( )
- 3 ( )
- 3 2( . )
- 3 3( . )
- 3 4( )
- 3 5( . )
- 3 6( )
- 3 7( )
- 4
- 5
- 6
- 7
- 8
- 8 2
- 8 3
- 8 4( )
- 9 ( )
- 10 ( )
- 11
- 12 ( )
- 13 ( )
- 14 ( )
- 15 ( )
- 15 2( )
- 15 3( )
- 15 4
- 15 5( )
- 15 6( )
- 15 7( )
- 16 ( )
- 17 ( )
- 18 ( )
- 19 ( )
- 19 2( )
- 19 3( )
- 19 4( )
- 19 5( )
- 19 6(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4 2( )
- 24 3( )
- 25 ( )
- 25 2( )
- 25 3( )
- 25 4( )
- 25 5( )
- 25 6( )
- 25 7( )
- 26 ( )
- 26 2( )
- 26 3( )
- 26 4( )
- 26 5( 가 )
- 26 6( )
- 26 7( )
- 26 8( )
- 26 9( )
- 26 10( )
- 26 11( . )
- 26 12( . )
- 26 13( . )
- 26 14( )
- 26 15( )
- 27 ( . )
- 28 ( . )
- 28 2( )
- 28 3( )
- 28 4( )
- 28 5( . )
- 28 6( . )
- 28 7( )
- 28 8( )
- 28 9( )
- 29 ( )
- 30 ( 가 )
- 30 2( 가 )
- 30 3( )
- 30 4( )
- 30 5( )
- 30 6( )
- 30 7( . )
- 30 8( . )
- 30 9( . )
- 30 10( . )
- 31 ( )



48 ( )



[ 2019. 7. 2.] [ 29950 , 2019. 7. 2., ]

( - , , ) 044 - 202 - 7746, 7739, 7738  
( - MSDS, PSM) 044 - 202 - 7758, 7754  
( - , ) 044 - 202 - 7729, 7733  
( ) 044 - 202 - 7690

1 ( ) 「 」  
[ 2009. 7. 30.]

2 ( ) 「 」 ( " " )  
[ 2009. 7. 30.]

2 2( ) 3 1 ( " )  
" ) 1 . < 2013. 8. 6.>  
「 」  
[ 2009. 7. 30.]

3 ( ) 4 1 2  
, .  
< 2010. 7. 12., 2014. 3. 12.>  
[ 2009. 7. 30.]  
[ 2014. 3. 12.]

3 2( . ) 4 1 5 .  
.  
< 2010. 7. 12., 2012. 1. 26.>  
.  
< 2010. 7. 12., 2013. 8. 6.>  
2 .< 2010. 7. 12., 2013. 8. 6.>  
[ 2009. 7. 30.]

3 3( . ) 4 1 6 .  
.< 2010. 7. 12.>  
1. .  
2. .  
3. .  
1 . <  
2010. 7. 12.>  
[ 2009. 7. 30.]

3 4( ) 4 1 6  
.< 2010. 7. 12.>  
1.

2. 1 .<

2010. 7. 12.>  
[ 2009. 7. 30.]

3 5( ) 4 1 8 .< 2010. 7. 12.>

[ 2009. 7. 30.]

3 6( ) 4 1 10 .< 2010. 7. 12.>

1. .< 2010. 7. 12.>  
2. 1 [ 2009. 7. 30.]

3 7( ) , 3 3 2 3 6  
가 .

[ 2009. 7. 30.]

4 <2010. 2. 24.>

5 <2010. 2. 24.>

6 <2010. 2. 24.>

7 <2010. 2. 24.>

8 <2010. 2. 24.>

8 2 <2010. 2. 24.>

8 3 <2010. 2. 24.>

8 4( ) 9 2 1 " " .< 2016. 10. 27., 2017. 10. 17.>

1. 가

2. ( " " )가 2  
2 2. ( 1 )

2 3. 10 1

3. 10 2 3 2

4. 49 2 1 가

29 1 가 3

3 ) 1 ( 2 3

가 .< 2016. 10. 27., 2017. 10. 17.>

9 2 2 " " 가 500

( [

(下受給人) ]

.< 2017. 10. 17.>

- 1.
- 2.
- 3.

[ 2009. 7. 30.]

9 ( ) 13 3 ( " " ) 1 2 .< 2010. 7. 12., 2013. 8. 6.>

.< 2013. 8. 6.>

13 1

.<

2014. 3. 12.>

13 1

.< 2013. 8. 6., 2014. 3. 12.>

[ 2009. 7. 30.]

10 ( ) 14 1 " . " .< 2010. 7. 12., 2010. 11. 18., 2014. 3. 12., 2016. 10. 27.>

- 1. 가 . (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가.

. [ 15 4 ( " ) ]

. [ 16 3 ( " " ) ] 15 4

]

. ( 16 3 3 )

6. 41 2 가 .

7. . 1 . . ,

14 1 " " 2 . " " 14 1 " . "

.< 2010. 7. 12., 2010. 11. 18.>

1. 31 3

2. 36 2 1 ) ( 가 36 2 2 )

3.

[ 2009. 7. 30.]

[ ] 10

1. 30 50 : 2018 9 1

2. 20 30 : 2019 9 1

11 <2006. 9. 22.>

12 ( ) 15 2 . ,  
3 .

1 300 [ 120  
( 「 」 1 150 ) 300  
] 15 1 13 1

.< 2014. 3. 12.>

1 2 18 1

. , 3  
. < 2017. 10. 17.>

1 가

1 .

300 . < 2010. 11. 18.>

1. . . ( )

2. 15

1 3 가

. < 2010. 7. 12.>

15 4

14

. 15 3

. <

2010. 7. 12., 2014. 3. 12.>

[ 2009. 7. 30.]

13 ( ) 15 2 가 .

< 2010. 7. 12., 2012. 1. 26., 2014. 3. 12.>

1. 19 1 29 2 1 .  
. 20 1 ( " )  
" )

2. 34 2 . ( " . " )  
35 1 . ( " ) .  
" ) .

2 2. 41 2 가 .

3. .

4.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가 . . . . .  
 가 가 . . . . . < 2012. 1. 26.>  
 1 . . . . . < 2012. 1. 26., 2014. 3. 12.>  
 10 2 . . . . . < 2012. 1. 26.>  
 [ 2009. 7. 30.]  
 [ 2014. 3. 12.]
- 14 ( ) 15 2 4 . . . . .  
 [ 2009. 7. 30.]
- 15 ( ) 15 4 300 . . . . .  
 < 2014. 3. 12.>  
 가 1 12  
 1 . . . . . < 2014. 3. 12.>  
 [ 2009. 7. 30.]
- 15 2( ) 15 4 . . . . . < 2014. 3. 12.>  
 1. 52 4 ( )  
 2. [ 2012. 1. 26.]  
 [ 2014. 3. 12.]
- 15 3( ) 15 4 . . . . . < 2010. 7. 12., 2014. 3. 12.>  
 . . . . . < 2010. 7. 12., 2014. 3. 12.>  
 [ 2009. 7. 30.]  
 [ 2014. 3. 12.]
- 15 4 <1997. 5. 16.>
- 15 5( ) 15 2 1 5 " . . . . . < 2012. 1. 26., 2014. 3. 12.>  
 1.

- 2.
- 3.
- 4.

[ 2009. 7. 30.]  
 [ 2014. 3. 12.]

15 6( ) 15 3 3 4 2

[ 2012. 1. 26.]

15 7( ) 15 3 1

. <

2010. 7. 12.>

1 30

가

15 .< 2010. 7. 12.>

2

2

.< 2010. 7. 12.>

[ 2009. 7. 30.]

16 ( ) 16 2  
 5

1

16 1 300

17 1

가

.< 2014. 3. 12.>

12 3

6

" ,"

" "

" ,"

" "

"

.<

2016. 2. 17.>

[ 2009. 7. 30.]

17 ( ) 16 2 가

< 2012. 1. 26., 2014. 3. 12.>

1. 19 1

2. (保護具)

3. 41

4. 41 2 가

5. 22 1 ( 가 6 1 )

6.

7. ( 가 6 1

2 )

가.

가

가

8.

9.

10.

11.

12.

13.

14.

1

.< 2012. 1. 26.,

2014. 3. 12.>

10

2

13

2

3

.< 2010. 7. 12., 2012. 1. 26.>

[ 2009. 7. 30.]

[ 2014. 3. 12.]

18 (

)

16

2

6

[ 2009. 7. 30.]

19 (

)

16

3

.< 2014. 3. 12.>

.< 2016. 2. 17.>

1.

300

2.

1

.< 2010. 7. 12., 2014. 3. 12.>

15

2

[ 2009. 7. 30.]

19 2(

)

16

3

.<

2010. 7. 12., 2012. 1. 26., 2014. 3. 12.>

1.

52

4

2. 가

3. 「

」

4. 「

」

2

1

6

5.

[ 2009. 7. 30.]

[ 2014. 3. 12.]

19 3(

)

15

3

15

5

15

7

< 2014. 3. 12.>

[ 2009. 7. 30.]

19 4( ) 16 3  
 1 20 50 1 . <

2017. 10. 17.>

- 1.
- 2.
3. ,
4. , ,
- 5.

1. 14
2. 18
3. .

1 19 5 1

2 3 . .

[ 2016. 10. 27.]

[ ] 19 4

1. 30 50 : 2018 9 1
2. 20 30 : 2019 9 1

19 5( ) 16 3 1

1. 31 . .
2. 41 2 가 .
3. 42 .
4. 43 .
5. , .
6. . .

[ 2016. 10. 27.]

[ ] 19 5

1. 30 50 : 2018 9 1
2. 20 30 : 2019 9 1

19 6( ) 19 4 1  
 16 3 3 15 4

가 1

19 4 1

[ 2016. 10. 27.]

[ ] 19 6

1. 30 50 : 2018 9 1

2. 20 30 : 2019 9 1
- 20 ( ) 17 2  
50 가 . , 19  
1 . < 2014. 3. 12.>  
22
- 2 가 , .< 2010. 7. 12.>  
2 .< 2010. 7. 12.>  
[ 2009. 7. 30.]
- 21 ( ) 17 2 「 」 . < 2012. 1. 26.>  
[ 2009. 7. 30.]
- 22 ( ) 17 2 . <  
2010. 7. 12.>  
1. 43 ,  
2.  
3.  
1  
[ 2009. 7. 30.]
- 23 ( ) 18 1 " " 가 100 ( , 1 20  
50 ) . < 2012. 1. 26., 2014. 3. 12., 2017. 10. 17.>  
1. <2014. 3. 12.>  
2. <2014. 3. 12.>  
3. <2014. 3. 12.>  
4. <2014. 3. 12.>  
5. <2014. 3. 12.>  
6. <2014. 3. 12.>  
7. <2014. 3. 12.>  
[ 2009. 7. 30.]
- 24 ( ) 18 3  
. < 2012. 1. 26., 2014. 3. 12.>  
1. 26  
2. 29 2 .  
3. 30 .  
4. .

5. 41 2 가 9 3 4 . " " "

" , " 13 1 " " 1 " . < 2014. 3. 12.>

[ 2009. 7. 30.]

24 2( ) 「 」 2 10 ( " "

) 50 가 18 2 1

1 1 2

3 7 가

1. 「 」 2 6 49 1

2.

가. 「 」 25

. 「 」 2 5

. 「 」 43

. 「 」 12

. 「 」 8 2

3. 「 」 8 3

4. 52 2 1

5. 「 가 」

6. 「 가 」 5

7. 「 가 」 7

1 18 2 1

2

[ 2017. 10. 17.]

24 3( ) 18 2 1

1. 18 2 1

2. 1

3. 1

4.

1

[ 2017. 10. 17.]

25 ( ) 19 8

6 2 . < 2010. 7. 12., 2013. 8. 6.>

1. <2013. 8. 6.>

2. <2013. 8. 6.>

[ 2009. 7. 30.]

25 2( )

1. ( , )  
가 .

2. 61 2 ( " " )

가 1  
3. 가 9 ( )

5 , 50 100 .< 2013. 8. 6., 2014. 3. 12.>

1. ( )

2. ( 12 1 , ) 1

3. ( 16 1 , ) 1

4. ( )

5. 가 9 가 29 2

1 . < 2012. 1. 26.>

1.  
2. , 가

[ 2009. 7. 30.]

25 3( ) (互選)

1 .

[ 2009. 7. 30.]

25 4( )

, . < 2012. 1. 26.>

, , 1 , .

- 1.
- 2.
- 3.
- 4.

[ 2009. 7. 30.]

25 5( )

3

1. 19 2
- 2.
- 1

[ 2009. 7. 30.]

25 6( )

[ 2009. 7. 30.]

25 7( ) 26 2 2 "

- 1.
2. 「 」 54 1
3. 26 2 1
4. 26 2 1

[ 2018. 10. 16.]

26 ( ) 28 1 " "

2010. 2. 24., 2010. 7. 12.>

- 1.
2. , , , , 가 가
3. 38 1 가
4. 「 」 8 1

( " " )

29 1 " " " .< 2013. 8. 6.>

29 5 1 " " .

< 2014. 3. 12., 2017. 10. 17.>

29 5 3 " " .< 2017. 10.

17.>

1. , 가
2. . 가

[ 2009. 7. 30.]

26 2( ) 29 2 1 " " 120 ( 「 」 1 150 )

[ 2009. 7. 30.]

[ 26 3 <2014. 3. 12.>]

- 26 3( ) 29 2 1 . ( " "
- )
- 1.
  2. 가 1 . , 가
  3. 20
- .< 2016. 2. 17.>
- 1.
  2. 1
  - 2 2. 1 ( 5 40 )
  3. 20
- 20

[ 2009. 7. 30.]

[ 26 4 , 26 3 26 2 <2014. 3. 12.>]

- 26 4( ) , 2
- ( " " ) ,
- 25 3, 25 4 2 4 , 25 5 25 6 .

[ 2009. 7. 30.]

[ 26 5 , 26 4 26 3 <2014. 3. 12.>]

- 26 5( 가 ) 29 3 1 . ( ) .
1. 31 (飛階)
  2. 6
  3. (支保工) 2
  4. 가
- 29 3 1 가 「 」
- ( " " )
1. 「 가 」 ( 1 3 )
  2. 「 가 」 ( )
  3. 「 가 」 ( 1 3 )
  4. 「 가 」 ( 1 4 )

[ 2014. 3. 12.]

[ 26 5 26 4 <2014. 3. 12.>]

- 26 6( ) 30 1 " "
- < 2010. 2. 24., 2010. 7. 12.>

[ 2009. 7. 30.]

26 7( ) 30 2 1 ( " )

. < 2014. 3. 12.>

1. 52 4 ( )
- 2.

[ 2012. 1. 26.]

26 8( ) . < 2010. 7. 12.>

[ 2009. 7. 30.]

26 9( ) 15 3 15 5 15 7

[ 2009. 7. 30.]

26 10( ) 31 5 가 「 」 2 6 3

31 5

31 5 32 3 15

2 1 5 " " 15

- 1.
- 2.
- 3.
4. 31 1 3

[ 2016. 10. 27.]

26 11( ) 31 2 1 " 6 4

. < 2013. 8. 6.>

- 1.
2. 가 「 」 2

[ 2012. 1. 26.]

26 12( ) 31 2 1

1

[ 2012. 1. 26.]

26 13( ) 31 2 1 32 3 15 2 1 5 " "

- 1.
- 2.
- 3.

4. 31 2 3 .  
 [ 2012. 1. 26.]

26 14( ) 32 3  
 . < 2013. 8. 6.>

- 1.
2. 6 5 .  
 가. 가 「 」 2

[ 2012. 1. 26.]

26 15( ) 32 3 26 12 26  
 13 " 31 2 1 " " 32 3 " , " 31 2 3 " " 32  
 4 " .  
 [ 2012. 1. 26.]

27 ( . ) 33 1 .  
 . 7 . < 2014. 3. 12.>

33 3 .  
 . 8 . < 2010. 7. 12., 2014. 3. 12.>

[ 2009. 7. 30.]

28 ( . ) 34 2 " " .  
 < 2010. 7. 12., 2012. 1. 26., 2014. 3. 12.>

1. 가. (剪斷機) (折曲機)

.  
 .  
 .  
 .  
 .  
 . (射出成形機)  
 . (高所)

. ( )

2. 가. (揚重機用)

.  
 .  
 .



[ 2012. 1. 26.]

[ 28 4 28 9 <2012. 1. 26.>]

28 5( . ) 35 1 "

"

1.

가. ( )

.

.

.

가 ( . . . )

.

.

( , , . , )

.

가 ( , , , , )

.

(chamber)

2.

가. 가

.

.

(研削機)

.

가

.

.

. 가 ( 28 1 2 가

.

)

3.

가. ( 28 1 3 가 )

.

( 28 1 3 )

.

( 28 1 3 )

.

( )

1

.

[ 2012. 1. 26.]

[ 28 2 <2012. 1. 26.>]

28 6( . ) 36 1 "

. < 2012. 1. 26., 2016. 2. 17., 2016. 10. 27.>

1.

2.

3. ( 2 )

4.

5.

- 6.
7. ( )
8. ( )
- 9.
- 10.
11. ( )
12. [ (型 締結力) 294 (KN) ]
13. [ 「 」 3 3 4  
(高所作業臺) ]
- 14.
15. 36 1 . ,  
 . < 2010. 7. 12. >  
 [ 2009. 7. 30. ]  
 [ 28 3 <2012. 1. 26.> ]
- 28 7( ) 36 5  
 28 2 28 3 . " " " " .  
 [ 2012. 1. 26. ]
- 28 8( ) 36 10 15 2  
 28 4 . " " " " ,  
 " " " " .  
 [ 2012. 1. 26. ]
- 28 9( ) 36 2 8 15 2 1 5  
 " " . < 2012. 1. 26., 2014. 3. 12., 2017.  
 10. 17. >
- 1.
- 2.
- 3.
- 4.
5.  
 [ 2009. 7. 30. ]  
 [ 28 4 <2012. 1. 26.> ]
- 29 ( ) 37 1 . . .  
 . < 2010. 2. 24., 2010. 7. 12., 2014. 12. 9., 2016. 2. 17. >
1. (黃燐)
2. ( 2 )
3. (PCT)
4. 4 -
5. ,
6. -
7. ,

- 8. ( 5 )
- 9. 3 7 ( 1 )
- 10. 「 」 2 5
- 11.

[ 2009. 7. 30.]

30 ( 가 ) 38 1 가  
. < 2010. 2. 24., 2010. 7. 12., 2012. 1. 26., 2016. 2. 17.>

- 1.
- 2. -
- 3.
- 4. -
- 5.
- 6.
- 7.
- 8. ( 가 )
- 9.
- 10.
- 11.
- 12.
- 13. <2016. 2. 17.>
- 14. 1 11 ( 1 )
- 15. 12 ( 0.5 )
- 16.

[ 2009. 7. 30.]

30 2( 가 ) 38 1 30  
. 가 . 가  
. < 2010. 7. 12.>

[ 2009. 7. 30.]

30 3( ) 38 2 2 " . < 2010. 7. 12., 2012. 1. 26.>

- 1. ( 2 ) 가 50 ,  
. 가 50
- 2. ( 「 」 2 12 ) 가  
200 , 가 200
- 3. ( )  
15 1  
가.



- 4. 38 2 6
- 5. 30 4
- 6. 38 5 2
- 7. 38 5 2

8. . . .

[ 2009. 7. 30.]

30 7( . . . ) 38 4 1 "

1. . , , 1 ( )  
50

2. 1 ( )

3. 1 ( ) 30 3 1 3 ( )  
15 1

4. 1 ( ) ,

80

38 4 1 " .

가 30 8  
38 4 3

[ 2009. 7. 30.]

30 8( . . . ) .  
(陰壓機) .

. < 2018. 12. 11.>

1 . < 2010. 7. 12.>

[ 2009. 7. 30.]

30 9( . . . ) .

. 가 . < 2010. 7. 12.>

. < 2010. 7. 12.>

[ 2009. 7. 30.]

30 10( . . . ) 38 4 6 15 2 1  
5 " "

< 2010. 7. 12., 2012. 1. 26.>

1. 38 3 .

2. 38 4 3

3. 38 4 3 ( )

4. . . .

[ 2009. 7. 30.]

31 ( ) 39 2 1 " . < 2016. 2. 17.>

- 1.
2. ( )
- 3.
- 4.
5. 2 -
6. ( . )
7. 6가
- 8.
- 9.
10. - 2,4 - - 2,6 -
- 11.
- 12.
- 13.

[ 2009. 7. 30.]

32 ( . ) 40 1 " . < 2010. 7. 12., 2016. 2. 17.>

- 1.
- 2.
- 3.
4. 40 3 , . , .
- 5.

[ 2009. 7. 30.]

32 2( . ) 41 1 " . < 2010. 7. 12., 2011. 10. 25., 2012. 1. 26., 2012. 6. 7., 2014. 12. 9., 2016. 1. 6.>

1. 「 」
2. 「 」 .
3. 「 」
4. 「 」
5. 「 」
6. 「 」
7. 「 」
8. 「 」 가
9. 「 . . 」
10. 「 」
11. 「 」 2 1
12. 1 11
13. . 가

[ 2009. 7. 30.]

[ 2012. 1. 26.]

32 3( ) 42 7

1. :
2. : ( ) 가

[ 2009. 7. 30.]

32 4( ) 32 3 1

1. 가
2. 「 」
3. 「 」 2 1 6
4. 32 3 2 42 1

32 3  
 . < 2010. 7. 12.>

[ 2009. 7. 30.]

32 5( ) 42 4 가

. < 2010. 7. 12.>

15 3 2

[ 2009. 7. 30.]

32 6( ) 42 10  
 " "

15 2 1 5  
 . < 2010.

7. 12., 2012. 1. 26.>

- 1.
- 2.
3. 42 2
- 4.
5. 42 8 가
- 6.

[ 2009. 7. 30.]

32 7( ) 43 11  
 " "

15 2 1 5  
 . < 2010.

7. 12., 2012. 1. 26.>

- 1.
- 2.

3. 43 9 . 가

4.

5. 가

6.

7.

[ 2009. 7. 30.]

32 8( . ) 46 (潛艦)

1 . ,가 .  
. < 2010. 7. 12.>

23 24 .

. < 2010. 7. 12.>

1. (坑)

2.

3. 가

4.

5. . . 가

6.

7.

8.

9. . . 가 가

[ 2009. 7. 30.]

33 ( ) 47 4 15 2 1 5 " . < 2012. 1.

26.>

1.

2. 1 가

3.

[ 2009. 7. 30.]

33 2( . ) 48 1 " 300

. < 2012. 1. 26., 2014. 3. 12.>

1. 가 ( 가 )

2.

3.

4.

5.

6.

- 7.
- 8.
- 9. 1
- 10. 가
- 11.
- 12.
- 13.

[ 2008. 8. 21.]

[ 33 2 33 3 <2008. 8. 21.>]

33 3( . ) 49 1 . ( " .  
 " )  
 . < 2010. 7. 12.>

[ 2009. 7. 30.]

33 4( ) . 15 3 15 5 .

[ 2009. 7. 30.]

33 5( . ) 49 1 9  
 . . . .  
 . < 2010. 7. 12.>

[ 2009. 7. 30.]

33 6( ) 49 2 1 " .  
 " 10 . . . .  
 . < 2012. 1. 26., 2014. 3. 12., 2017.

10. 17.>

- 1.
- 2.
- 3.

10 1 2

- 4.
- 5.
- 6.
- 7.

1 . < 2010. 7. 12., 2012. 1.

26.>

- 1.
- 2.
- 3. 가
- 4. .
- 5.
- 6. 「 가 」 가 .
- 7. 「 가 」 가

8. 가
- 49 2 1 " "
- < 2012. 1. 26.>
1. 가 1 ( 2 2 )
2. 1
- [ 2009. 7. 30.]
- 33 7( ) 49 2
- < 2010. 7. 12.>
- 1.
2. 가
- 3.
- 4.
- 5.
- [ 2009. 7. 30.]
- 33 8( ) 33 6 ( )
- 가 10
- )
- 49 2 1
- 「 가 」 가 23
- 가 ( " 가 " ) 41 (
- " " ) 33 7
- 가
- < 2010. 7. 12., 2014. 3. 12., 2015. 2. 10.>
- 1 가 「 가 」 2 가 13
- 가 11
- 2 28 가 가
- 가
- [ 2009. 7. 30.]
- 33 9( ) 가 49 2
- 48
- [ 2009. 7. 30.]
- 33 10( ) 51 2 1 1 " 가
- "
1. 2 가
2. 49 2 1
- [ 2009. 7. 30.]
- 33 11( ) 52 2 1 4 " "
- < 2014. 3. 12.>



3. 「 」 : 12  
 4. ( . . . ), ( : 12  
 5. 2 4 3  
 : 12  
 6. 「 」 : 12  
 7. 52 3 1 : 12

8. 52 3 1  
 : 12  
 33 14 2 1 2  
 .< 2017. 10. 17.>

[ 2014. 3. 12.]

33 16( ) 100 40 , 60  
 33 14 5 가 , 10 6

[ 2009. 7. 30.]

33 17( )  
 , 5

[ 2009. 7. 30.]

33 18( 가 ) 52 4 1 ( 52 7 2 )  
 2 가 .< 2010. 7. 12.>  
 1 2 ( 52 4 2 2  
 )  
 1 10 가

[ 2009. 7. 30.]

34 ( ) 52 10 " "

[ 2014. 3. 12.]

35 ( ) 52 15 5 " "

1. 52 2 가  
 2. 52 7 2 가  
 3. 52 11 1 2  
 4.

[ 2014. 3. 12.]

36 <2003. 6. 30.>

37 <2003. 6. 30.>

38 <2003. 6. 30.>

39 <2003. 6. 30.>

40 <2003. 6. 30.>

41 <2003. 6. 30.>

42 <2003. 6. 30.>

43 <2003. 6. 30.>

44 <2003. 6. 30.>

45 <2003. 6. 30.>

45 2( ) 61 2 1  
. < 2010. 7. 12.>

1. 가

2. 「 」 10 가

3.

4.

( 8 10 ) 1 1 , 1 2 4  
8 10 .< 2010. 7. 12.>

1.

2.

3.

4.

5.

6. 가

7.

8.

9.

10.

2 , .

.< 2010. 7. 12.>

.< 2010. 7. 12.>

[ 2009. 7. 30.]

45 3( )  
. < 2010. 7. 12.>

1. 가 45 2 1 1  
 2. 45 2 1 2 4

3.  
 4.

[ 2009. 7. 30.]

45 4( ) 62 1 " "  
 . < 2010. 2. 24., 2010. 7. 12., 2010. 11. 18., 2014. 3. 12.>

1. , , . , , , , ,  
 2. .  
 3. .  
 4.  
 5.

5 2. 41 2 가

6.  
 7. .

8. .

9. 42 8 가 43 9

10. 가 .  
 11. 가 .

11 2. 61 3 .

12.

[ 2009. 7. 30.]

45 5 <1997. 12. 31.>

46 ( ) 65 1  
 . < 2010. 7. 12., 2012. 1. 26., 2014. 3. 12., 2016. 2. 17., 2016. 10. 27., 2017.

10. 17.>

1. 9 2 3

1 2. 10 2

2. 15 3 , 16 3 16 3 3

(定數)

3. 28 1 가 4 가

3 2. 30 2 4 가

3 3. 32 3 31 2

3 4. 34 7

4. 34 2 4

5. 34 3 1 ,

6. 34 4 2 .

- 7. 35 2 4
- 8. 35 3 1
- 9. 35 4 2 .
- 10. <2016. 10. 27.>
- 11. 36 2 4
- 12. 36 3 3
- 13. 37 2 .
- 14. 38 1 . 가 가, 4 .  
 , 5 가
- 15. <2016. 10. 27.>
- 16. 38 2 4
- 17. 38 4 1 . , 6
- 18. 38 4 3 .
- 19. 38 4 4 . 가
- 20. 38 5 1
- 21. 41 8
- 22. 42 1
- 23. 42 4 , 10
- 24. <2014. 3. 12.>
- 25. 43 1 , 11
- 26. 43 2 , 4
- 27. 47 2 . , ,  
 4
- 28. 48 4 .
- 29. 49 .
- 30. 49 2 3 , 9  
 가, 10
- 31. 50 1 2 .
- 32. 51 2
- 33. 51 6 . . .
- 34. 51 7
- 35. 51 8
- 36. 52 .
- 37. 52 4 1 , 52 15
- 38. 61 2 1
- 39. 63 2 1
- 40. 72 .
- 41. 12 6 , 16 3 20 3
- 42. 30 3 3
- 43. 32 5
- 44. 1 43

.< 2010. 7. 12., 2014. 3. 12.,  
> 2016. 10. 27.>

1. 15 4 15 2
2. 15 3
3. 16 3 ( . ) ,
4. 16 3
5. 30 2 1 3 ,
6. 30 2 3
- 6 2. 31 5 , 32 3 15 2
- 6 3. 32 3 , 32 3 15 2
- 6 4. 36 2 3 , 7 15 2
- 6 5. 38 2 2 , 7 15 2
7. 49 1 . , 4
8. 63 2 1
9. 15 3, 19 3( . ) , 26 9  
33 4
10. 1 9

[ 2009. 7. 30.]

47 ( ) 65 2 1 2,  
2 , 3 2, 4 2, 9 , 9 2, 10 2, 11 , 11 2 11 4 , 12 ,  
13 2, 13 3, 14 2, 15 17 , 17 2, 18 , 18 2 18 4  
19 . < 2010. 7. 12., 2012. 1. 26., 2014. 3. 12., 2017. 10. 17.>  
65 2 1 , 3 , 4 , 5  
8 , 10 , 13 14 .  
 . < 2010. 7. 12., 2012.  
1. 26., 2014. 3. 12.>

1. . , 65 2 4  
가.  
 .
2. 15 4 , 16 3 , 30 2 1 , 38 2 2 , 42 4 , 43 1 , 47  
2 49 1
3. . . , . . 가 「
4. . 가 「 」 2  
2 ,

.< 2010. 7. 12.>

[ 2009. 7. 30.]

[ 2012. 1. 26.]

47 2( ) 66 1 13 " " 4 8 · 9 6  
7

[ 2009. 7. 30.]

47 3( ) ( 65 가 「  
」 23 18 2  
, 19 1 4 가

1. 9
2. 10
3. 43
4. 43 2
5. 44
6. 45
7. 52 3
8. 52 4

[ 2013. 8. 6.]

47 4( ) 3  
( 3 )

< 2016. 2. 17., 2016. 10. 27.>

1. 2 2 1 1 3 : 2016 1 1
- 1 2. 19 4 : 2019 1 1
2. 33 . :
- 2014 1 1

3 ( 3  
.< 2014. 12. 9.,

2016. 12. 30.>

1. 23 : 2017 1 1
2. 25 5 : 2017 1 1
3. 32 4 : 2017 1 1
4. <2016. 12. 30.>
5. 32 6 : 2017 1 1

[ 2013. 12. 30.]

48 ( ) 72 1 5 13 .  
[ 2011. 4. 4.]

< 13053 ,1990. 7. 14.>

1 ( ) . , 26 , 28 1 8 29 2  
1992 1 1 .

2 ( ) . 44 1 6  
 .  
 . 16 1 7 " 43 " , 22 1  
 9 " 42 . 43 " " 42 " , 26 , 27 1 "  
 43 " " 46 " , 27 2 28 , 31 3 "  
 43 " " 46 " .  
 . 8 1 " " "

3 ( )  
 .  
 1991 12 31  
 .  
 12 3

4 ( )  
 .  
 16 3

5 ( )  
 .  
 1991 12 31

6 ( . ) 46 33  
 .  
 33 3 43 26  
 1 6 1 6  
 46 가 .  
 23 24 . 46 33

7 ( ) 4 7 8  
 .  
 1998 12 31 . < 1993.11.20, 1995.10.19 >

< 13282 ,1991. 2. 1.> ( )

1 ( )

2 5

< 13563 ,1991. 12. 31.> ( )

1 ( ) .  
2

< 13870 ,1993. 3. 6.> ( )

1 ( ) .  
2 4

< 14010 ,1993. 11. 20.>

( ) . , 46 10 11 47 1 7 2 8  
1994 7 1 , 28 1 10 11 1995 7 1 .

( ) ) 3 5 가  
1994 12 31 .

( ) )

19 1 1994

12 31 .

< 14438 ,1994. 12. 23.>

1 ( ) .  
2 5

< 14446 ,1994. 12. 23.>

1 ( ) ) . < >  
2 3

< 14447 ,1994. 12. 23.>

1 ( ) ) . < >  
2 5

< 14450 ,1994. 12. 23.>

1 ( ) ) . < >  
2

< 14787 ,1995. 10. 19.>

1 ( ) ) . , 33 5 33 8 1996 1 1  
, 17 1 3 , 32 2, 33 11 33 15 1996 7 1 ,

33 9, 33 10 33 16 1997 1 1 .  
 2 ( . ) 33 5 .  
 1996 4 4 1  
 9 30 .

<2000.8.5>

3 ( ) .

< 15372 ,1997. 5. 16.>

1 ( ) , 4 12 1997 7 1 ,  
 26 3 1 1999 1 1 , 29 1 2 30 7  
 2000 1 1 .

2 ( )  
 6 5 6

3 ( )  
 . 25 2 1997 7 31

4 ( )

, , .  
 , , .  
 2  
 1 가 2

5 ( )

< 15389 ,1997. 6. 11.> ( )

1 ( ) . < >

2

< 15598 ,1997. 12. 31.> ( )

1998 1 1

< 16115 ,1999. 2. 8.> ( )  
( )

< 16326 ,1999. 5. 24.> ( )  
1 ( )  
2 4

< 16388 ,1999. 6. 8.>

. , 25 3 1

< 16947 ,2000. 8. 5.>

1 ( ) , 10 1 5 2, 11 1 12 2  
2001 1 1 , 1 7 ( 42 , 43 1 3

6 ) 2002 1 1

2 ( ) 12 2 2001 1 1

3 ( ) 1 1 2  
40

4 ( ) 1 1 • 2 4 6  
가 28

5 ( ) 1 1 • 2 7  
41

6 ( ) 33 5 2 3  
가 6

7 ( • 가 ) 1 1  
38 1 • 가  
6 • 가

8 ( . ) 1 7  
23 24 . 6

9 ( ) 1 7  
47 . . 가  
6 . . 가

10 ( . 가 ) 8 20 23  
3 33 2 .

< 17115 ,2001. 1. 29.> ( )

1 ( ) .

2 4

5 ( ) <140>

<141>

4 2 " . . " " . . " .

<142> <152>

< 17137 ,2001. 2. 24.> ( )

1 ( ) .

2 5

6 ( )

4 10 " 45 1 " " 73 " .

7

< 18043 ,2003. 6. 30.>

1 ( ) 2003 7 1 .

2 ( ) 8 3 가

3 ( ) 26 1 3 38 가

. ( )

4 ( 가 . 가 ) 30 2

5 ( ) 29 1 2 . 3 . 5 8

6 . . .

1 . .

3 .

6 ( 가 ) 30 1 3 , 7 12 15

38 1

가

6

가 .

< 18312 ,2004. 3. 17.> ( 가 )

< 18343 ,2004. 3. 29.> ( 가 )

1 ( ) 2004 3 30

2

3 ( )

33 5 2 6 " 가

" " 가

"

4

< 18609 ,2004. 12. 28.>

1 ( ) 2005 1 1 , 33 9 2006 1 1

2 ( ) 33 9 1 가

3 ( ) 29 1 2

. . . . .

6 . . .

1 . .

3 .

< 19203 ,2005. 12. 28.> ( )  
 ( ) 2006 1 1 . < >  
 ( )  
 32 6 .

< 19513 ,2006. 6. 12.> ( )  
 1 ( ) 2006 7 1 .  
 2 3  
 4 ( ) <119>  
 <120>  
 4 2 "2 3 " "3  
 "  
 7 1 " 4 " " 4  
 "  
 <121> <241>

< 19691 ,2006. 9. 22.>  
 ( ) 2006 9 25 . , 25 2 4 5 2  
 ( 「 」 ) 7920 1  
 19 1 .  
 1. 500 : 2006 10 1  
 2. 300 500 : 2007 9 1  
 3. 200 300 : 2008 9 1  
 4. 100 ( 25 2 • 50 ) 200 :  
 2009 9 1  
 ( ) .

< 19804 ,2006. 12. 29.>  
 ( ) 2007 7 1 .  
 ( ) 3 .

< 20483 ,2007. 12. 28.>

- 1 ( ) 2008 1 1 . , 2, 9 2, 10, 11
- 2008 7 1 .
- 2 ( )

< 20681 ,2008. 2. 29.> ( )

- 1 ( ) . < >
- 2 4
- 5 ( )

4 2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⑳

< 20973 ,2008. 8. 21.>

- 1 ( ) 2009 1 1 .
- 2 ( . ) 33 2 1

< 21263 ,2009. 1. 14.> ( )

- 1 ( ) .
  - 2 ( )
- 33 7 3 , 47 1 , 2 3 " "
- " "

< 21653 ,2009. 7. 30.>

- 1 ( ) 2009 8 7 .
- 2 ( ) 3

3 ( ) 32 4 30 4  
 . . ( )

30 4 6 38 2

4 ( ) 8 4

5 ( )

3 26 10 . .

< 22061 ,2010. 2. 24.>

1 ( ) 2010 4 10 .

2 ( ) .

4 13 " 「 」 7

( " " )" " 「 」 8

( " " )"

1 3 " " "

" , 가 18 2 "

" " " , 18 8

" " "

< 22269 ,2010. 7. 12.>( )

1 ( ) . < >

2 2 ( ) <75>

<76>

3 , 3 2 1 3 , 3 3 1 . 2 , 3 4 1

. 2 , 3 5, 3 6 1 . 2 , 10 1 6 . 4 3 , 12 6

, 13 1 8 , 15 3 1 . 2 , 15 6 2 , 15 7 1 . 2 .

4 , 19 2 , 20 3 . 4 , 22 1 3 , 26 1 4 , 26 2 3 , 26

6, 28 1 2 . 2 , 28 2 1 2 . 2 , 28 3 2 , 29 11 ,

30 16 , 30 2, 30 3 1 3 . 3 , 30 4 1 , 30 5

1 . 2 , 30 6 4 , 30 9 1 . 2 , 32 4 . 5 , 32 2 12 , 32

5 1 , 32 6 5 , 32 7 3 , 33 5 , 33 6 2 8 , 33 7 5 ,

33 8 1 , 33 13 2 . 3 , 45 2 1 . 2 10 . 4 . 5 ,

45 3 , 45 4 11 , 46 1 . 2 , 47

1 . 2 . 2 . 3 , 48 2 , 4 8 . 9 , 5

19 , 7 17 , 8 24 13 25 • 59 • 60  
 • 64 • 71 • 72 • 73  
 " " " " .  
 9 1 , 12 5 • 6 , 15 2, 15 3 1 • 2 , 17 2 , 19 3  
 , 19 2 , 20 3 , 25 2 , 26 7, 26 8, 27 2 , 30 2,  
 30 3 3 , 30 4 2 , 30 5 1 • 2 , 30 6 3 , 30 8 2 , 30 9  
 1 • 2 , 30 10 1 , 32 4 3 , 32 5 1 , 32 6 3 , 32 7 1 • 2  
 • 4 • 5 , 32 8 2 • 3 9 , 33 3, 33 8 1 , 33 14 6 , 33  
 15 2 , 2 34 • 35 • 37 , 9 4 13 35  
 • 36 • 58 " " "  
 " .  
 33 18 1 " " " " .  
 46 1 2 " " " " .  
 <77> <136>

< 22496 ,2010. 11. 18.>

1 ( ) , 13 6  
 2 ( )  
 13 13

< 22824 ,2011. 4. 4.>

1 ( ) 2011 5 19  
 2 ( ) 13

< 23248 ,2011. 10. 25.>( )

1 ( ) 2011 10 26  
 2  
 3 ( )  
 32 2 1 " 「 」" " 「 」" .

⑳

4

< 23545 ,2012. 1. 26.>

1 ( ) 2012 1 26 .  
 2 ( 「 」 ) 10968 1  
 31 2 , 31 2 65 2 3 2 32 2, 32 3,  
 51 1 72 4 3 ( 31 2 )

1. 1,000 : 2012 6 1
  2. 500 1,000 : 2012 12 1
  3. 120 500 : 2013 6 1
  4. 20 120 : 2013 12 1
  5. 3 20 : 2014 6 1
  6. 3 : 2014 12 1
- 3 ( . ) 33 2 3 10 2012 7  
 1 . . .

4 ( ) 4 2 가  
 5 ( , , . ) 28 1 , 28  
 5 1 7 2013 3 1 . .  
 6 ( )  
 30 6  
 7 ( ) 13

< 23845 ,2012. 6. 7.> ( )

1 ( ) 2012 6 8 .  
 2 3  
 4 ( )  
 32 2 4 " 「 」 " " 「 」 " .

< 24684 ,2013. 8. 6.>

1 ( ) 2014 1 1 . , 3 2 47 3  
 , 5 40 2015 1 1 .

2 ( ) 5 40 2015 1 1

< 25050 ,2013. 12. 30.>( )

2014 1 1 . < >

< 25251 ,2014. 3. 12.>

1 ( ) 2014 3 13 . , 23 33 2 6  
 , 10 .

- 1. 5 : 6
- 2. 5 : 1 6

2 ( ) 33 15

3 ( ) 12

4 ( . ) .

6 4 3

3

5 ( ) 13

6 ( )

18 2 1 1 " 「 」 5 1 . ,  
 , , " " 「 」 41 2 1 ,  
 . , , ,가 , , , " .

< 25836 ,2014. 12. 9.>( )

1 ( ) 2015 1 1 .

2 4

5 ( )

29 10

10. 「 」 2 4 5

⑰

6

< 25840 ,2014. 12. 9.> ( )

1 ( ) 2015 1 1 .

2 16

< 26093 ,2015. 2. 10.>

< 26858 ,2016. 1. 6.> ( . . )

1 ( ) 2016 1 7 .

2 ( )

32 2 9 " 「 . . 」 " " 「 . .  
 」 " .

3

< 26985 ,2016. 2. 17.>

1 ( ) . , 28 6 1 3 . 13 , 31 10 , 1

3 . 3 41 6 .

2 ( ) 3 41 1

3 ( )

13 4

< 27559 ,2016. 10. 27.>

1 ( ) 2016 10 28 . , 10 19 4 19 6

, 28 6 1 14 15

1

1. 30 50 : 2018 9 1
2. 20 30 : 2019 9 1
- 2 ( ) 8 4 1 1 2 2017 1 1
- 3 ( ) 26 10  
31 5 26 10 1  
6 3 1 6 3
- 1 3 6 3
- 4 ( ) 32  
3 3 6 5
- < 27751 ,2016. 12. 30.> ( 가 )  
1 ( ) 2017 1 1 . < >  
2 12
- < 27767 ,2017. 1. 6.> ( )  
1 ( ) 2017 1 7  
2 3  
4 ( )  
1 1 가 " " " " " "
- 5  
< 28368 ,2017. 10. 17.>  
1 ( ) 2017 10 19  
2 ( ) 8 4 1 2 , 2 2 2 3 2018 1  
1  
3 ( ) 8 4 3 2019 12 31 8  
4 3 "500 " "1,000 "

4 ( )

4 2

5 ( )

6

6

가

< 29233 ,2018. 10. 16.>

2018 10 18

< 29360 ,2018. 12. 11.> ( )

1 ( )

2018 12 13

. < >

2 ( )

30 8 1

"

"

"

"

6 4 2

6)

"

"

"

"

㉓

< 29950 ,2019. 7. 2.> (

210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 공정은 제외한다)</p> <p>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p> <p>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p> <p>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p>	<p>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조, 제39조의2</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p> <p>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p> <p>다. 정보서비스업</p> <p>라. 금융 및 보험업</p> <p>마. 전문서비스업</p> <p>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p> <p>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p> <p>아. 사업지원 서비스업</p> <p>자. 사회복지 서비스업</p>	<p>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p>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국제 및 외국기관</p>	<p>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p>
<p>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p>	
<p>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p>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p>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10. 17.>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제9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 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11.18>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사일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숲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 케이블(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숲을 일정 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1. 게이지 압력이 98킬로파스칼(kPa)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3. 맨홀작업
3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
37. 로봇작업
38.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 9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 4호·제5호·제9호·제12호 및 제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3. 농업, 임업 및 어업 24.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6의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 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

<p>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26의3. 환경 정화 및 복원업</p> <p>27. 운수 및 창고업</p> <p>28. 도매 및 소매업</p> <p>29. 숙박 및 음식점업</p> <p>3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p> <p>31. 방송업</p> <p>32. 우편 및 통신업</p> <p>33. 부동산업</p> <p>33의2. 임대업; 부동산 제외</p> <p>34. 연구개발업</p> <p>35. 사진처리업</p> <p>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p> <p>36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p> <p>37. 보건업</p> <p>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p> <p>39.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40. 기타 개인 서비스업</p>	<p>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다만, 제33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5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p>	<p>1명 이상</p>	<p>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제5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3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p>
<p>41. 건설업</p>	<p>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p>	<p>2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선입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p>	<p>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1명 이상</p> <p>나.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p>	
	<p>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p>	<p>1명 이상</p>	<p>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p>

	다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	---	--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3.8.6>

###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17. 10. 17.>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63조의2제2항의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 매출금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
- 라. 다목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times \text{업무정지 일수} \times 0.1$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10. 1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3의2.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3의3.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 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가구 제조업			
18.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19.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0.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1. 제2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2. 농업, 임업 및 어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4.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4의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4의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및 창고업 26. 도시철도 운송업 27. 도매 및 소매업 28. 숙박 및 음식점업 29.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0. 방송업 31. 우편 및 통신업	상시 근로자 5,000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p>32. 부동산업 33. 연구개발업 34. 사진 처리업 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5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36. 보건업 37. 골프장 운영업 38.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9. 세탁업</p>			
<p>40. 건설업</p>	<p>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p>	<p>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 원(토목공사업은 1,000억 원)을 기준으로 1,4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p>	<p>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p>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7. 10. 17.>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7. 삭제 <2017. 10. 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 <신설 2013.8.6>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 &lt;개정 2016. 10. 27.&gt;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제26조의10제1항 관련)

## 1. 공통사항

-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강사 2명)으로 한다.
-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시설 외의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관련 분야의 범위
-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 2. 인력기준

-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3)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산업안전·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다

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산업 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를 전공한 후 해당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4] <개정 2018. 12.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1. 공통기준

-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산업안전(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1) 산업안전(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1년(산업안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인 사람
  - 5) 건설 관련 기사 소지자로서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

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의자, 책상,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채광·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5] <개정 2016. 10. 27.>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제26조의14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사 2명 (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각 1명)]이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하여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시설 외의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관련 분야의 범위
  -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총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산업 안전	3) 안전관리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
산업 보건	6) 보건관리자 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보건

비고: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위생에 한정한다.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격기준
총괄 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6)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총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회전속도측정기	1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1
3) 소음측정기	1
4) 절연저항측정기	1
5) 접지저항측정기	1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7) 클램프메타	1
8) 검전기(저·고·특고압용일 것)	1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화학적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3) 소음측정기	1
4) 습구·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1
5)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7) 청력검사기	1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그테스터	1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
11) 혈압계	1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장비명	수량(대)
1) 절연저항측정기	1
2) 접지저항측정기	1
3) 클램프메타	1
4) 검전기(저·고·특고압용일 것)	1

5) 소음측정기	1
6)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8) 심폐소생 인체모형	1
9) 혈압계	1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지역시료 채취펌프	1
2) 유량보정계	1
3) 입체현미경	1
4) 편광현미경	1
5) 위상차현미경	1
6) 흡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1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1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1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
10) 저울(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일 것)	1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흙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퍼센트 이하인 특등급일 것)]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2.1.26>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7. 2.>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제27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셀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향타기
15. 향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0.7.12>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

종 류	진 단 내 용
<p>총 합 진 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li> <li>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li> <li>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li> <li>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li> </ol> </li> <li>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li> <li>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li> <li>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li> <li>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li> <li>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li> <li>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li> <li>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li> <li>바.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li> </ol> </li> <li>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li> <li>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li> <li>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안전기술진단</p>	<p>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p>
<p>보건기술진단</p>	<p>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p>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16.2.17.>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33조의6 제1항 관련)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제조·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제조·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제조·취급·저장: 150
4	포스겐	제조·취급·저장: 750
5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취급·저장: 20,000
6	암모니아	제조·취급·저장: 200,000
7	염소	제조·취급·저장: 20,000
8	이산화황	제조·취급·저장: 250,000
9	삼산화황	제조·취급·저장: 75,000
10	이황화탄소	제조·취급·저장: 5,000
11	시아나화수소	제조·취급·저장: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제조·취급·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제조·취급·저장: 20,000
14	황화수소	제조·취급·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제조·취급·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제조·취급·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제조·취급·저장: 50,000
18	수소	제조·취급·저장: 50,000
19	산화에틸렌	제조·취급·저장: 10,000
20	포스핀	제조·취급·저장: 50
21	실란(Silane)	제조·취급·저장: 50
22	질산(중량 94.5% 이상)	제조·취급·저장: 250
23	말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제조·취급·저장: 50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제조·취급·저장: 3,500
25	톨루엔다이소시아네이트	제조·취급·저장: 100,000
26	클로로술폰산	제조·취급·저장: 500,000
27	브롬화수소	제조·취급·저장: 2,500
28	삼염화인	제조·취급·저장: 750,000
29	염화 벤질	제조·취급·저장: 750,000
30	이산화염소	제조·취급·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제조·취급·저장: 150
32	브롬	제조·취급·저장: 100,000
33	일산화질소	제조·취급·저장: 1,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제조·취급·저장: 1,5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취급·저장: 2,500
36	삼불화 붕소	제조·취급·저장: 150
37	니트로아닐린	제조·취급·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제조·취급·저장: 500
39	불소	제조·취급·저장: 2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제조·취급·저장: 5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취급·저장: 2,500
42	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제조·취급·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제조·취급·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제조·취급·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제조·취급·저장: 1,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제조·취급·저장: 2,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제조·취급·저장: 3,500
48	불산(중량 1% 이상)	제조·취급·저장: 1,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 2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 20,000

비고

-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kPa)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kPa)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 가. 한 종류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frac{C}{T}$ )이 1 이상인 경우
    -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유해·위험물질 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 $\frac{C}{T}$ )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R = \frac{C_1}{T_1} + \frac{C_2}{T_2} + \dots + \frac{C_n}{T_n}$$
- 주)  $C_n$ : 유해·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 $T_n$ : 유해·위험물질별(n) 규정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14.3.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제33조의12제2항 관련)

1.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타워크레인·전기설비 등 기계·기구·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 나. 전기·기계기구설비, 화학설비 및 공정의 설계·시공·배치·보수·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 다.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전력시스템, 전자파 및 정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 등에 관한 기술 지도
  -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 마. 크레인 등 기계·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 마.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술지도
  - 바.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 사.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 마.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4.3.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 (제33조의14제3항 관련)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직업환경 의학 분야	산업보건 분야	
전공필수	과목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시험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 포함)</li> <li>-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li> <li>- 기계·기구·설비의 설계·배치·보수·유지기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기계·기구 등 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li> <li>-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등</li> <li>-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li> <li>- 컴퓨터·계측제어설비의 설계 및 관리 기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li> <li>- 정성·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확산 및 피해 예측 등</li> <li>- 유해위험물질 화재 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li> <li>-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li> <li>- 추락·낙하·붕괴·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li> <li>-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 판단 및 대책 등</li> <li>-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종별 직업환경의학적 관리 대책 등</li> <li>- 유해인자별 특이환경 조건 측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li> <li>- 근골격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환경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상응검사·유지관리기술 등</li> <li>- 유해인자별 직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 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li> <li>-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li> <li>- 측정시료의 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li> </ul>

공통 필수 I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험 범 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통 필수 II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시험 범 위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산업위생개론, 작업관 리, 산업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공통 필수 III	기업진단·지도	
시험 범 위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 론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lt;개정 2018. 10. 16.&gt;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른 감경 없이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 나.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가.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 나.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 반
가.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1,000	1,000	1,000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72조 제3항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라.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법 제72조 제5항제1호	1) 전부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마.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4)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5) 법 제41조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6)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30 30 30 30 30	150 150 150 150 150 150	300 300 300 300 300 300
바.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법령 규정에 반하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당)	3	15	30
사.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300	500 400	500 500
아. 법 제14조제1항	법 제72조		300	400	500

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 5 항 제 3 호					
자.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300 500 300 500 300	500 400 500 400 5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차. 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4 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카.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300	400	500	

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호				
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0	500	500
파.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0	500	500
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0	500	500
거.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나.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30	150	300

<p>더.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p>	<p>법 제72조 제5항제3호</p>	50	250	500
<p>러.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p>	<p>법 제72조 제6항제2호</p>	5	10	15
<p>머.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72조 제4항제1호의2</p>	300	600	1,000
<p>버.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72조 제5항제3호</p>	150	300	500
<p>서.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p>	<p>법 제72조 제5항제3호</p>	150	300	500
<p>어.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p>	<p>법 제72조 제5항제3호</p>	150	300	500
	<p>1) 수급인이 따르지 않은 경우</p>	150	300	500
	<p>2) 수급인의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p>	5	10	15

하지 않은 경우						
저.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처.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000	1,000	1,000	
커.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000	1,000	1,000	
터.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퍼.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0 목적 외 사용금액	1,000 목적 외 사용금액	1,000 목적 외 사용금액	
허. 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 우	제 4 항 제 2 호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고. 법 제 30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 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 72 조 제 6 항 제 3 호		200	250	300
노. 법 제 31 조 제 1 항 을 위반하여 정기 적으로 안전·보 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72 조 제 5 항 제 3 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 의 근로자에 대한 정 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 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도. 법 제 31 조 제 2 항 을 위반하여 근로 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 안전·보건 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72 조 제 5 항 제 3 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로. 법 제 31 조 제 3 항 을 위반하여 유해 하거나 위험한 작 업에 근로자를 사 용할 때 안전·보 건에 관한 특별교 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72 조 제 5 항 제 3 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모. 법 제 31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 를 채용할 때 기 초안전·보건교육	법 제 72 조 제 5 항 제 3 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0	30	
	법 제72조 제6항제4호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0	30	
소.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4호의2		300	300	300	
오.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00	500	1,000	
조.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	250	500	
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코.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토. 법 제36조제4항	법 제72조	1) 안전검사를 받지 않	50	100	200	

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제4항제2호	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포.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300	600	1,000
호.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 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4호의3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200	300
구.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 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	1,000	1,500

			금 액 이 500만원 을 초과하 는 경우에 는 500만 원으로 한 다.		
		2) 그 밖의 경우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 액 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 액. 다만, 해당 금액 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 으로, 해 당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에 는 1,500만 원으로 한 다.	3,000	5,000
누. 법 제38조의4제 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 · 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150	300	500
두. 법 제38조의4제 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 제거작 업을 신고하지 않 은 경우	법 제72조 제 6 항 제 5 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100 50	200 100	300 150
루. 법 제38조의5제 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 가 석면농도기준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150	300	500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무.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6호	100	200	300	
부.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수.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000	1,000	1,000	
우.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7호	30	150	300	
주.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2호	30	150	300	
추.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법 제72조 제6항제7호	300	300	300	

<p>· 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호 법 제72조 제5항 제2호</p>	<p>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p> <p>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p>				
<p>쿠.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p>	<p>호</p>	<p>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p> <p>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p>	<p>100</p>	<p>200</p>	<p>500</p>	
<p>투. 법 제41조제3항</p>	<p>법 제72조</p>	<p>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p>				

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작업장당)	제5항제1호	· 제공받은 경우	10	20	50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나)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	20	50				
				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	20	50
나)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대상화학물질 1종당)							

푸.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8호

		다)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대상화학물질 1종당)	5	10	20
		2) 대상화학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대상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후. 법 제41조제6항	법 제72조 제6항제8호	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변경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그. 법 제41조제7항	법 제72조 제6항제8호	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느. 법 제41조제8항	법 제72조		1,000	1,000	1,000

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기재사항 변경 명 령을 위반한 경우	제 4 항 제 3 호					
드. 법 제 41 조 제 11 항을 위반하여 물 질 안전 보건 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의 제공요구에 따르 지 않은 경우	법 제 72 조 제 5 항 제 2 호	1) 해당 정보를 갖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제공 하지 않은 경우 2)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그 정보를 제 공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르. 법 제 42 조 제 1 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 환경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72 조 제 4 항 제 4 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 자 1명당	5	20	50	
므. 법 제 42 조 제 1 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 환경 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 환경 측 정의 방법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72 조 제 5 항 제 5 호의 2		100	300	500	
브. 법 제 42 조 제 1 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 72 조 제 6 항 제 9 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	30	120	300	
스. 법 제 42 조 제 1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 가 요구하였는데 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제 72 조 제 5 항 제 5 호		500	500	500	
으. 법 제 42 조 제 3 항 을 위반하여 작업	법 제 72 조 제 5 항 제 5		100	300	500	

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호의3				
즈.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	250	500
츠.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크.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5호		500	500	500
트.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2호		5	10	15
프.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9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30	100	200
			300	300	300
흐.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	250	500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기.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2호		300	300	300
나.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1)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 근로자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500 5	1,500 10	1,500 15
다.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500	500	500
리.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4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48조제3항 단	1,000 300 1,000 1,000	1,000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를 위반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미. 법 제48조제3항	법 제72조 제6항제10호	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	150	300
비. 법 제48조제5항	법 제72조 제6항제11호	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	150	300
시. 법 제49조제1항	법 제72조 제4항제3호	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1,000	1,000
이. 법 제49조제2항	법 제72조 제3항제3호	1)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지. 법 제49조의2제1항	법 제72조 제4항제2호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	300	600	1,000

우 치.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않거 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 호		50	250	500
키.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 정안전 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 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 호		100	250	500
티. 법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공 정안전보고서 내 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하여 고 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11 호		30	150	300
피. 법 제4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 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 호	1) 사업주가 지키지 않 은 경우(내용위반 1건 당) 2) 근로자가 지키지 않 은 경우(내용위반 1건 당)	10 5	20 10	30 15
히.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여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 행 명령 또는 안전 보건개선계획 수 립·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 호	1) 법 제50조제1항에 다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50조제2항에 다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1,000	750 1,000	1,000 1,000
가. 법 제50조제3항 을 위반하여 산업	법 제72조 제5항제3		50	250	500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호					
나.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6호		1,000	1,000	1,000	
라.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12호		300	300	300	
마.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	300	500	
바.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12호의2		300	300	300	
샤.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법 제72조 제5항제7호		50	250	500	

아.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4호		5	10	15
자.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50	300	500
차. 법 제52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2호	1)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카.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법 제72조 제6항제13호	1)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64조제3항을	30	150	300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